

의안 번호	1548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5. 8.(수)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9. 5. 8.(수)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8. 5. 21.(화)

2. 제안설명 요지(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채광물 매각대금을 원석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던 것을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변경(안 제29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조정(안 제30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청년 등 미취업자 창업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안 제31조)

다.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계화)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 반영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 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17조(사용료 감면)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전문개정 2009. 4. 24.]

[시행일 : 2019. 6. 5.] 제17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	---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 5., 2012. 10. 26., 2016. 12. 30.>